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조세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기업	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 하도록 함.
공포 법령	금융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꾸려 '목표수익률'을 마련하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금융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금융공사가 가족 관계 증명, 복지 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 요건, 재산 상황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 정보자료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

#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b>박성중</b> (국민의힘)</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 등 OTT(Over the Top)를 통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양이 2019년 8월 기준 55만 테라바이트에서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2년간 약 45% 증가하였으며, 동영상 에 의한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61%를 넘어서고 있음.</p> <p>그러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또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p> <p>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최근 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내용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등).</p>	<p>이데일리 22.04.17. 인수위 간사 박성중 의원,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 발의 합류</p> <p><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32297104&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32297104&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p>	22.04.14. 제안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L2K0I3F1L6Y1K5C4M0S1E8U5A9V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L2K0I3F1L6Y1K5C4M0S1E8U5A9V6)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b>김주영</b> (더불어민주당)</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함. 반면, 국내 기업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뿐, 사업장의 신설·증설에 따른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음. 그런데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과의 과도한 세제혜택 차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이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p> <p>출처:<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N2B0K1K1I3P1I0K4Q5C1G0K5P7S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N2B0K1K1I3P1I0K4Q5C1G0K5P7S5</a></p>	<p>한국경제 22.04.13. 국내기업 신증설 투자도 세액공제…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0606350005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0406063500054?input=1195m</a></p>	22.04.14. 제안

##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b>고용진</b> <b>(더불어민주당)</b>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8년 6월 말 기준 전 국민의 약 66%가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p> <p>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p> <p>의료계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p>	<p>한국일보 22.04.18.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p> <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815130002769?cid=NA">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815130002769?cid=NA</a></p>	<p>20.10.08. 제안</p> <p>20.11.24. 소위 상정</p> <p>20.12.02. 소위 상정/ 제안설명</p> <p>21.09.28. 소위 상정/ 제안설명</p> <p>21.11.17. 소위 상정</p> <p>21.11.23. 소위 상정</p>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N011H0D0R8T0E9D2J6O3S9R2R0Y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N011H0D0R8T0E9D2J6O3S9R2R0Y7)

###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p>■ 개정이유</p> <p>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용자로 하여금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운영자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상·지원수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제9조의2 신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마다 두어야 하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업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관련 경험·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p>	<p>조선일보 22.04.19. 잠자던 퇴직연금 300兆, 이제야 역지로 깨운다</p> <p><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2/04/19/EYV23MZOUNGODPU0553E2S7YL4/">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2/04/19/EYV23MZOUNGODPU0553E2S7YL4/</a></p>	<p>22.04.13. 일부개정</p> <p>22.04.14. 시행</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제16조 신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p> <p>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제16조의4, 제16조의5 및 제16조의10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2)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국채 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등 13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경우만 가능)가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p> <p>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등(제16조의15 신설)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수준은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적립금 운용방법 확대(제25조제1항라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 신설)</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범위에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취득하는 예탁금'과 '유동화증권 중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추가함.</p> <p>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부과하던 과태료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함.</li> <li>2)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li> <li>3)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li> </ol>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 개정이유</p> <p>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의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p> <p>■ 주요내용</p> <p>가.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안 제37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li> </ul> <p>나.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안 제37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li> </ul> <p>다.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37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li> </ul> <p>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7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li> </ul> <p>출처: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076?opYn=Y&amp;lsNm=%ED%95%9C%EA%B5%AD%EC%A3%BC%ED%83%9D%EA%B8%88%EC%9C%B5%EA%B3%B5%EC%82%AC%EB%B2%95&amp;isOgYn=Y&amp;edYdFmt=2022.+4.+19.&amp;stYdFmt=2021.+10.+1">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076?opYn=Y&amp;lsNm=%ED%95%9C%EA%B5%AD%EC%A3%BC%ED%83%9D%EA%B8%88%EC%9C%B5%EA%B3%B5%EC%82%AC%EB%B2%95&amp;isOgYn=Y&amp;edYdFmt=2022.+4.+19.&amp;stYdFmt=2021.+10.+1</a></p>	<p>매일경제 22.04.13. 주택금융 신청서류 6월부터 확 줄어든다</p> <p><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31712/">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31712/</a></p>	22.04.12. ~ 22.05.09.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 [한국경제][사설] 겁주기 일변도 중대재해법, 합리적 개선 시급하다(2022.04.20.)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42006851>

**주요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표적 ‘족쇄 규제’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서 법 위반시 처벌 방식을 ‘징역·벌금’에서 ‘벌금’ 중심으로 바꾸고, 모호한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기준도 명확하게 보완한다고 함. 중대재해법은 시행 석달 만에 중대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기업들의 피해만 가시화되며 ‘기업 최고 재앙법’으로 판명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경찰,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사고 조사에 나서면서 사고 현장은 초토화 상태. ‘겁주기’ 일변도의 중대재해법은 법 조항 전체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은 요원해보이기 때문에, 인수위도 당장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수준에서 손질을 시작한 것으로 짐작됨. 아쉽지만 경영계와의 협력 속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음.

### [경향신문][사설] '광주 참사' 현산 영업정지 푼 법원, 이래서 중대재해 줄겠나(2022.04.14.)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4142052015>

**주요내용**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미뤄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현산 측에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 이에 따라 18일부터 현산은 당분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본안소송이 아닌 일시적 처분이기는 하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기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됨. 이번 판결은 행정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기업이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 당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법원은 이번과 같은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인식해야 함.

## [조선일보][기사] 매일유업 평택공장서 직원 사망...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2022.04.18.)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4/18/BUILCX5PGFG3NPVF35REUFJMM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4/18/BUILCX5PGFG3NPVF35REUFJMM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주요내용**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 사고 당시 해당 직원은 기계를 점검 중이었고, 현장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둠.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안전 수칙 등이 준수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이고,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며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임.

## [파이낸셜뉴스][기사] 중대재해법·최저임금·탈원전 방향 튼다...文 색깔 지우는尹[새정부 정책 대변화 예고](2022.04.17.)

<https://www.fnnews.com/news/202204171844414897>

**주요내용** 현 정부가 추진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위주 에너지믹스 정책 등이 차기 정부 18개 부처 초대내각 구성 내에서 변화될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사고를 감축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담은 방향으로 보완됨.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이 너무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개정을 요구해왔음. 산재사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입법보완을 요구했으며, 산재 감소가 주요 목적인데 중대재해법은 근본적 해법이 되지 않아 산업안전정책이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컸음. 윤 당선인도 “형사 기소 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침.

##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윤형석**  
변호사  
T : 02-3016-8737  
E : hsyoon@draju.com

### 기업자문그룹



**정경록**  
경영총괄변호사  
T : 02-563-2900  
E : krjeong@draju.com

### 조세팀



**김신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57  
E : shiny@draju.com

### 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